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검사·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또한,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부칙 제29617호)

정밀진단·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기한을 2025.12.23.(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 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검사·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 28조제3항)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검사·진단 자료(3년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생략(안 별표2, 안 별표4)

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설계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

라.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안 별표4)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5의2)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3. 8. ~ 2023.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별표2의 비고 제5호 중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교체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를 “교체하였거나 교체를 위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 중(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체이후 최초의 정밀진단은 교체가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한다.(시설의 일부만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4 제1호 가목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같은 호 다목 중 “교체한 경우 교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를 “교체하였거나 교체를 위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 중(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교체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시설의 일부만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5의2 제1호의 비고 가목 2)의 “별표 1”을 “별표 1 제3호가목1), 4)의 직무분야 또는”으로 하고, “제3호라목1), 3), 5)”를 “제3호라목1), 2), 3), 5)”으로 하며, “6)의 직무분야”를 “6)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호아목2)의 직무분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617호 부칙 제2조 제1호 중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며, 제3조 중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3년 이내에”를 “5년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u>
[별표 2]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비고 5. 철도시설을 <u>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교체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u>	[별표 2]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비고 5. ----- <u>교체하였거나 교체를 위해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 중(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체이후 최초의 정밀진단은 교체가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한다.(시설의 일부만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u>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라. _____
 _____ 제40조에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생략)

[별표 5의2]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1.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

비고

1.“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
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
인

1) 구조물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다목1), 2), 4), 5), 9) 또는
10)의 직무분야

2) 건축물 분야 :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1), 5) 또는 10)의 직무
분야 또는 같은 표 제3호라
목1), 3), 5) 또는 6)의 직무
분야

부 칙

<제29617호, 2019.03.12>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

---.

마.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1.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

비고

1.“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
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
인

1) 구조물 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다목1), 2), 4), 5), 9) 또는
10)의 직무분야

2) 건축물 분야 :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1), 4)의 직무분야 또는
제3호다목1), 5) 또는 10)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
호라목1), 2), 3), 5) 또는 6)
의 직무분야 또는 같은 표
제3호아목2)의 직무분야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

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2.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4년 이내

3.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제2호에 따른 날과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날 중 늦은 날까지

제3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

한 특례) -----

-----.

1. -----

-----: -----

----- 5년 이내

2. -----

-----: -----

----- 5년 이내

3. (현행과 같음)

제3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u>란</u>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이 고시된 날부터 <u>3년 이내</u>에 실 시한다.	고시되기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u>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u> <u>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u> <u>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u> <u>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 가목에</u> <u>도 불구하고</u> ----- ----- <u>5년 이</u> <u>내에</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624